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조례에 ‘범용(유니버설)디자인’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,
- “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2022~2026)”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,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범용(유니버설)디자인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위원회의 심의(제외) 대상을 명확화 (안 제16조~제17조)
-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27조)
- 관계기관과 협력 및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28조~안 제29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30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및 향상을 위해 범용(유니버설) 디자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(안 제2조), 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과 심의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, 유지·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음.
- 시설물의 기능은 물론이고 디자인도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내 건축물과 도로, 공원 등 도시나 환경 시설과 관련된 디자인이 향상되어 주민이 만족하고 충북 공공디자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